

한국의 FTA 해설

제 10주



유 하상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1. 한국의 FTA 추진과정

(1)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

1) 1990년대까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통상정책(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 1993년 EU, 1994년 NAFTA의 성공적 발전으로 세계무역질서 변화
- DDA협상의 지연(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인도 크게 하락)

2) 2000년 이후 FTA 추진

- 경제효율성 제고
- 대규모 시장형성
- EU/NAFTA 등 타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한국의 FTA 추진현황(1/3)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발효 (5건,16개국) | 칠레 |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 싱가포르 |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 EFTA (4개국) |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 유럽시장 교두보 |
| | ASEAN (10개국) |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국 (2010년 기준) |
| | 인도 |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2010.1월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체결 (3건,29개국) | 미국 |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2010.12월 추가협상 타결 2011.2.10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 거대 선진경제권 |
| | EU |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2010.10.06 서명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 페루 |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월 가서명, 2011.3.21 서명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U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 전형적 강소국, 세계최고수준의 국민소득)

한국의 FTA 추진현황(1/3)

| | | | |
|--------------------|--------------|---|---------------------------|
| 협상진행 (7건, 12개국) | 캐나다 |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 | 북미 선진 시장 |
| | GCC (6개국) | 07.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08.7월, 09.3월, 7월) |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
| | 멕시코 |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 | 북중미 시장 교두보 |
| | 호주 |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10, 12월) 5차례 협상 개최(09.5, 9, 12월, 10.3, 5월) 4차례 회기간회의 개최(10.8, 10, 11월, 11.1월) |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
| | 뉴질랜드 |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9, 11월) 총 4차례 협상 개최(09.6월, 9월, 12월, 2010.5월) 10.7월 정상회담, 10.8월 및 11.2월 통상장관회담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콜롬비아 |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협상 개최(09.12월, 2010.3, 6, 10월)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 터키 | 08.6월~09.5월 공동연구 2010.1월 국장급 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2010.4월, 7월, 2011.3월)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한국의 FTA 추진현황(1/3)

| | | | |
|-----------------------------------|-------------------|--|---|
|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 일본 |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 후 중단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4차례 개최(08~09년) 동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한 협의 진행중 (제1차 회의 10.9월 동경 개최) |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
| | 중국 | 07.3월 ~ 20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 진행중 (제1차 회의 10.9월 북경 개최)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2010년 기준) |
| | 한·중·일 | 03~09년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 09.10월 한·중·일 정상회의시 공동연구 추진 합의 4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2010. 5월, 9월, 12월, 2011. 3월) |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 |
| | MERCOSUR (4개국) |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 (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 BRICs국가, 자원부국 |
| | 이스라엘 | 09.8월 공동연구 개시 2010.8월 연구 종료 |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
| | 베트남 | 3차례 FTA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2010. 6, 10월, 2011. 3월) | 우리의 제 4위 투자대상국 (2010년 기준) |
| | 몽골 | 08.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 자원부국 |
| | 중미 (6개국) | 10.10월 공동연구개시 * 참여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 | 말레이시아 | 11. 5. 1 FTA 타당성 연구 개시 |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
| | 인도네시아 | 11.5월 한-인도네시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한-ASEAN FTA Upgrade,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

한국의 Global FTA Network (2011. 5월 현재)



- a. 최근 FTA 추진단계
 - b. 2010년 WTO 수리 시장 규모 (EU는 Extra기존, EFTA 제외, EFTA 제외국 제외)
 - c. 2009년 WTO 평균 실효 관세율
- 동의 색기는 수리시장 규모에 비해



● 발효 또는 타결
 ● 협상 진행중
 ● 사전 준비 단계

한-칠레 FTA

1. 의의

- 우리나라 첫 FTA(우리나라 FTA의 시발점)
-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 첫 FTA
 - 유망시장인 중남미로의 기업진출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인프라 구축
 - 남미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첫 성공사례
-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반영한 무역자유화 방식 채택
-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 쌀, 사과, 배 등 협정의 예외품목을 적용,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
 -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수출 67%를 차지하는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확보
 - 칠레로는 아시아 교역확대 교두보 마련, 우리나라는 중남미권 교두보 확보
-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의 재확인으로 대외신뢰도 제고
 - 우리나라 대외개방 및 내부개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한-칠레 FTA

2. 경제적 영향

(1)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음, 이와 같은 FTA 체결 다발국에서의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 해소
- 자동차,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개 품목(대칠레 수출이 67%)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개 품목 5년 동안 균등 철폐로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정부조달협정으로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확대 기대

(2)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 우리의 민감품목인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제외
-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 등 370개 품목의 관세철폐를 DDA협상 종료 후 논의하기로 보류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쿼터를 허용하거나 관세의 점진적 철폐
- 양자 세이프가드를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

한-칠레 FTA

2. 협정의 구조(1/2)

제1부 일반조항

제1장 최초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2부 상품무역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부속서(우리측 양허안/칠레측 양허안))

제4장 원산지 규정(-부속서)

제5장 통관절차

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8장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제9장 표준관련 조치(-부속서)

제3부 투자 및 서비스

제10장 투자(-부속서)

제11장 국경간 서비스무역(-부속서)

제12장 전기통신(-부속서)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부속서)

한-칠레 FTA

2. 협정의 구조 2/2

제4부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

제15장 정부조달(-부속서)

제16장 지적재산권(-부속서)

제5부 행정 및 제도관련 규정

제17장 투명성

제18장 협정의 운영(-부속서)

제19장 분쟁해결(-부속서)

제6부 기타 규정

제20장 예외

제21장 최종조항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소개

가. 작지만 강한 나라

- 소규모 도시형 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 25,192에 이르는 경제강국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당시 국민소득 512달러)
- 인구 424만명, 면적 서울시보다 약간 큰 국가, GDP 1068억 달러, 연간 교역액 3354억 달러,
- 적극적 외자유치와 수출지향적 공업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제비즈니스 중심지화를 통한 경제발전 추진
- 서비스와 전자산업이 경제발전의 중심축(서비스가 GDP의 61.7% 차지)

표 III-1.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1~05년)

| | 단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추정) |
|-----------------|-------|--------|--------|--------|--------|----------|
| GDP(명목) | 십억 달러 | 86.0 | 88.3 | 92.3 | 106.8 | 116.6 |
| 실질GDP증가율 | % | -2.0 | 3.2 | 1.4 | 8.4 | 4.1 |
| 1인당 GDP | 달러 | 20,816 | 21,163 | 22,063 | 25,192 | 27,098 |
| CPI 상승율 | % | 1.0 | -0.4 | 0.5 | 1.7 | 1.6 |
| (상품)수출 | 십억 달러 | 122.5 | 126.0 | 145.1 | 180.8 | 200.5 |
| (상품)수입 | " | 109.7 | 110.2 | 120.9 | 154.6 | 175.9 |
| 경상수지/GDP | % | 16.7 | 16.8 | 24.9 | 21.2 | 28.3 |
| 평균환율(싱가포르달러/달러) | | 1.79 | 1.79 | 1.74 | 1.69 | 1.63 |
| 외환보유고 | 십억 달러 | 75.4 | 82.0 | 95.7 | 112.8 | 113.0 |

자료: Globalinsight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소개

가.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

- 세계 2위의 무역항 세계 4대 외환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
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세계 6000여개의 다국적 기업 진출)

다. 동아시아 FTA Hub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적극적 대외통상정책 추진, 여러 나라와 FAT체결(뉴질랜드,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EFTA) 기타 많은 국가와 FTA 추진계획

표 III-3. 싱가포르의 FTA 체결 및 협상추진 현황(2005년 6월 현재)

| 기체결 국가 | 협상 중인 국가 | 추진합의 국가 |
|----------------------|----------|---------|
| 뉴질랜드 | | 바레인 |
| 일본 | | 이집트 |
| 호주 | 캐나다 | 페루 |
| 미국 | 인도 | 스리랑카 |
| 요르단 | 멕시코 | 파나마 |
| EFTA ¹⁾ | 카타르 | 쿠웨이트 |
| TPS EP ²⁾ | | UAE |
| 인도 | | |
| 한국 | | |

주 : 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됨.

2)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4국간 FTA를 의미함.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한-싱가포르 FTA

1. 협정의의의 및 기대효과

가.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 및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유망 투자지역임
- FTA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 허브를 지향/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 FTA를 통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됨
-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

다.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투자 확대 및 원활화

-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및 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됨
- 한/칠레 FTA에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 협력분야 등이 추가

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특혜관세 혜택 수혜
-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막힌 수출통로를 한/싱 FTA를 통해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한-싱가포르 FTA

2. 협정의 구조(1/2)

제10장 투자

제11장 전기통신

제12장 금융서비스(부속서 : 구체적 약속, 금융서비스활동)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부속서 :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제16장 정부조달

-부속서(정부조달 범위, 정부조달 이행)

제17장 지적재산권

제18장 협력(부속서 : 협력 세부분야별 협력)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부속서 : 모범 절차규칙)

제21장 예외

제22장 행정 및 최종조항

한-싱가포르 FTA

2. 협정의 구조(2/2)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부속서 : 관세철폐 계획)

제4장 원산지 규칙

-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부속서 : 4.3조(개성공단관련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부속서 : 4.4조(역외가공)에서 규정된 상품

제5장 통관절차

-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부속서 :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관세접촉선

제6장 무역규제

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부속서 : 전기통신기기 관련분야별 부속서)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현재조치 및 자유화 약속에 대한 유보,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 약속, 전문직 서비스)

한-EFTA FTA

1. EFTA소개

-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EEC에 반대하여 7개국이 FTA체결(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 1970년 초 EC와 FTA체결
-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EU가입
-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 EU와 유럽경제지역협정(EEA) 체결
-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기와 FTA 체결
- 4개국 총 GDP 6220억 달러(세계 9위), 무역액 3660억, 총인구 1240만명
- 1인당 국민소득 38,656달러
- 오일, 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부문에 경쟁력 보유
- 농업 비중 낮음(GDP의 1.7%)

한-EFTA FTA

2. 한/EFTA FTA 기대효과

가. 선진경제권가의 FTA로 효과 극대화

- 최초의 선진경제권/유럽경제권

나.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구조조정비용 최소화로 상호간 경제적 이익 증대

다. 한국 제품의 EFTA시장 진출 확대

- EFTA 측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
- 우리나라는 99.1%의 상품을 7년 이내 관세철폐(높은 수준의 자유화), 단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간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또는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 의류, 자동차, 선박, 가족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증대,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의 신규진출 기대

라.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

- 서비스업 개방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 기대, EFTA가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선진기법 도입 전망

한-EFTA FTA

2. 한/EFTA FTA 기대효과

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확보

- 북한산 제품의 판로확보에 가요
-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의 북한 설립시에도 동일한 혜택 향유

바.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진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우리의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상 주의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 불식)
- 양측간 TV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방송의 유럽진출 확대, 양측간 문화교류 확대, 국가 이미지의 제고에 기여

사.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활성화

-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로 투자확대 기대

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 EU는 산업구조 보완성이 큰 경제권이며, 선진화된 경제체제로 FTA 체결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FTA와의 협상과정에서 유럽국가의 개방적 사고와 합리적 접근방식 그리고 실질적 시장개방효과 지향성 등에 관한 경험축적

한-EFTA FTA

3. 협정의 구조

전문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상품무역 부속서(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지리적 적용, 적용배제물품, 가공농산물, 어류 및 기타 수산물, 관세철폐의 유형)

제3장 서비스무역 부속서(서비스 양허표, 서비스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 상호인정, 통신 서비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제4장 금융서비스

제5장 경쟁

제6장 정부조달(부속서 정보조달 접촉선)

제7장 지식재산권(부속서 지식재산권 세부사항)

제8장 조직규정

제9장 분쟁해결

제10장 최종조항

-공동선언(관세인하 일정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에 의한 선언

-대한민국과 EFTA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서비스 관련)

별도협정문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 투자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 농업에 관한 협정

한-ASEAN FTA

1. ASEAN의 소개

- 개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체계
- 총인구 5억명, 70-80년대 연평균 7-8% 고도성장을 이루어낸 대표적 신흥경제
- ASEAN의 역사
 - 1) 제1기 : 1960년대 동남아 정치적 혼란과 ASEAN 설립
 - 1961년 ASA(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설립, 필리핀-말레이시아 영토 분쟁으로 기능상실
 - 1967년 ASEAN 설립(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후 나머지 5개국의 가입으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 성장
 - 2) 제2기 : 1990년대 : CLMV의 가입과 도약기
 - 1990년대 탈냉전시대와 지역주의 추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 움직임
 -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가입으로 인구 5억명, GDP 6천억 달러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
 -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인력, 과학, 교통 등의 대통합을 추구
 - 3) 제3기 : 2000년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 2003년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본격적 발효
 - ASEAN, ASEAN+, ASEAN+1, ASEN+3(한중일) 등의 형태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 지속적 모색

East Asian Nations and Growing Regionalism

| <i>Forums</i> | ASEAN 10 | ASEAN 7 | China | Japan | RoK | DPRK & Mongolia | Hong Kong | Chinese Taipei | Mekong Countries |
|-----------------------|---------------------|--------------------|--------------|--------------|------------|--------------------------------|----------------------|---------------------------|-----------------------------|
| ASEAN+1 | y | n | Y | y | y | | | | |
| ASEAN+3 | y | n | y | y | y | | | | |
| APEC | | y | y | y | y | | y | y | |
| ASEM | | y | y | y | y | | | | |
| GMS | | | y | | | | | | y ¹ |
| ARF | y | n | y | y | y | y | | | |
| EALAF | y | n | y | y | y | | | | |
| IDEA | y | n | y | y | y | | | | |
| ACD | y ² | n | y | y | y | | | | |
| AMBDC | y | n | y | Invited | Invited | | | | |
| ACCORD | y | n | y | | | | | | |
| Quadrilateral | | | y | | | | | | y ³ |
| MRC | | | Observer | | | | | | y ⁴ |
| <i>Boao Forum for</i> | y | n | y | y | y | | | | |

한-ASEAN FTA

1. ASEAN의 소개

- 개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체계
 - 총인구 5억명, 70-80년대 연평균 7-8% 고도성장을 이루어낸 대표적 신흥경제
 - ASEAN의 역사
 - 1) 제1기 : 1960년대 동남아 정치적 혼란과 ASEAN 설립
 - 1961년 ASA(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설립, 필-말레 영토 분쟁 기능상실
 - 1967년 ASEAN 설립(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 2) 제2기 : 1990년대 : CLMV의 가입과 도약기
 - 1990년대 탈냉전시대와 지역주의 추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 움직임
 -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가입으로 인구 5억명, GDP 6천억 달러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가입한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
 -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인력, 과학, 교통 등의 대통합을 추구
 - 3) 제3기 : 2000년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 2003년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본격적 발효
 - ASEAN, ASEAN+, ASEAN+1, ASEN+3(한중일) 등의 형태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 지속적 모색
- EAS :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신규 참여국 가입으로 ASEAN 중심의 지역협력 구도 형성

표 1. ASEAN 회원국의 주요경제지표(2005년 기준)

| 구분 | 인구 | GDP | 1인당GDP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입액 | 무역수지 | 무역 의존도 |
|-----------------|------------|------------|--------------|----------------|----------------|------------------|---------------|------------|
| 단위 | 백만 명 | 십억 달러 |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 |
| 필리핀 | 84.37 | 98 | 1,157 | 40,929 | 43,885 | 84,814 | -2,957 | 87 |
| 말레이시아 | 25.69 | 131 | 5,090 | 141,781 | 108,390 | 250,170 | 33,391 | 191 |
| 싱가포르 | 4.35 | 117 | 26,840 | 226,923 | 186,862 | 413,785 | 40,061 | 354 |
| 인도네시아 | 220.3 | 281.1 | 1,276 | 86,641 | 63,856 | 150,497 | 22,785 | 54 |
| 태국 | 62.79 | 177 | 2,813 | 109,139 | 117,710 | 226,849 | -8,570 | 128 |
| 브루나이 | 0.37 | 5.9 | 16,135 | 6.0 | 3.2 | 9 | 3 | 0 |
| ASEAN 6 | 398 | 809 | 2,033 | 605,419 | 520,706 | 1,126,125 | 84,713 | 139 |
| 베트남 | 83.54 | 52 | 628 | 32,360 | 33,271 | 65,631 | -911 | 125 |
| 라오스 | 5.92 | 3 | 484 | 677 | 1,275 | 1,952 | -597 | 68 |
| 미얀마 | 50.54 | 9.8 | 194 | 2.5 | 2.5 | 5 | 0 | 0 |
| 캄보디아 | 13.87 | 5.00 | 360 | 2,714 | 3,679 | 6,393 | -964 | 128 |
| CLMV | 154 | 70 | 456 | 35,754 | 38,227 | 73,982 | -2,473 | 106 |
| ASEAN 10 | 552 | 879 | 1,593 | 641,173 | 558,933 | 1,200,106 | 82,239 | 137 |

자료 : Global Insight(www.globalinsight.com)

한-ASEAN FTA

2. 의의 및 기대효과

가. 거대 경제권과의 FTA

- 10개 회원국, 5억면 인구, 한국의 5대 교역시장(미, 중, 일, EU) 총교역의 10%
- 구매력 증가로 수출증대 기대

나. 중-ASEAN FTA에 대한 대응

중-ASEAN FTA 2005년 발효,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 출발하였지만 중국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선점효과 차단 효과 기대

-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보호(초민감품목에 품목기준 및 수입액 기준 3% 상한선 설치/ 품목수 기준 3% 상한선만 설정할 경우 초민감품목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훨씬 초과하여 40-50%가 될 수도 있음) 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 등
- 그 대신에 아세안 국가들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하여 부분적 개방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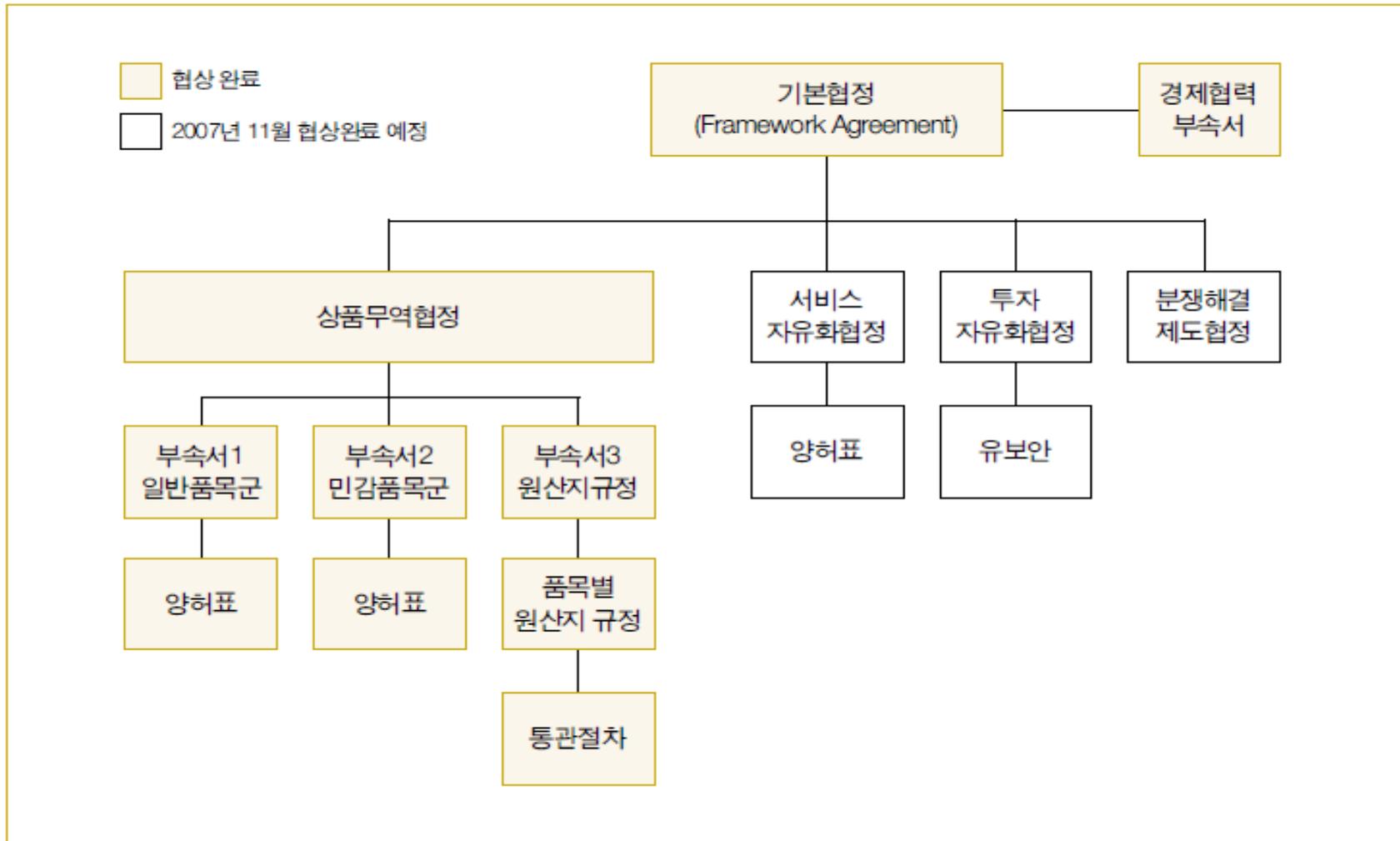
다. 일본의 아세안 정책과의 차이

- 일본은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FTA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체결하였으며, 태국과도 체결할 계획
- 따라서 일본보다 앞서 ASEAN시장접근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ASEAN 주력 품목이며, 경쟁품목인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라는 의미에서 한-싱 FTA에서의 경우와는 다름

그림 II-1.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인도 CFPA

1. 인도 소개

거대 신흥경제 대국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에 불과, 그러나 11.5억명의 인구, 구매력 평가기준 GDP 3조 3천억 달러, 세계 4위 거대 소비시장(미, 중, 일), 년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

표1.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비교

| 구분 | 인도 | 한국 |
|-------------------|---------------------|---------------------|
| 인구('08) | 1,149백만명 | 49백만명 |
| 국토면적 | 328만km ² | 9.9만km ² |
| 수출('08) | 1,319억불 | 4,220억불 |
| 수입('08) | 2,258억불 | 4,353억불 |
| 외환보유액('09.5월말 기준) | 2,623억불 | 2,268억불 |
| 명목 GDP('08) | 12,097억불 | 9,470억불 |
| 구매력평가 기준 GDP('08) | 32,883억불 | 13,423억불 |
| 1인당 GNI('08) | 1,070불 | 21,530불 |
| 실질 GDP 증가율('08) | 7.3% | 2.2% |
| 소비자물가 상승률('08) | 8.3% | 4.7% |

출처 : World Bank, IMF, OECD,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한-인도 CFPA

1. 인도 소개

나. 최근 교역/투자액 증대 추세 국가

1973년 국교수립, 2000년대 교역액 20억 달러, 2008년 166억 달러(8배 증가), 투자액도 크게 증가

표2. 대인도 교역추이

(단위:억불)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수출 | 13.8 | 28.5 | 36.3 | 45.5 | 55.3 | 66.0 | 89.8 | 49.9 |
| 수입 | 12.5 | 12.3 | 18.5 | 23.1 | 36.4 | 46.2 | 65.8 | 23.0 |
| 무역수지 | 1.4 | 16.2 | 17.8 | 22.4 | 18.9 | 19.8 | 24.0 | 26.9 |
| 교역액 | 26.3 | 40.9 | 54.8 | 68.6 | 91.7 | 112.2 | 155.6 | 72.9 |

주: * 1월부터 8월까지 자료

표4. 한국의 대인도 투자 추이

(단위:백만불. 건)

| 구분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누계 ('68-'09) |
|----|----|------|------|------|-------|-------|-------|-------|-------|-----------------|
| 신고 | 금액 | 43.0 | 21.2 | 48.9 | 112.7 | 150.3 | 327.7 | 281.0 | 144.2 | 2,300.2 |
| | 건수 | 16 | 27 | 56 | 75 | 152 | 204 | 214 | 62 | 1,017 |
| 투자 | 금액 | 45.4 | 16.9 | 40.8 | 91.1 | 98.5 | 291.2 | 188.5 | 67.6 | 1,558.6 |
| | 건수 | 45 | 40 | 82 | 116 | 224 | 346 | 324 | 104 | 1,572 |

주: * 1월-6월까지 자료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한-인도 CFPA

2. 기대효과

가. 거시적 경제효과

- 경제성장율, 산업생산율 증가, 무역수지 개선, 소비자 후생 증대

표6. 한-인도 CEPA의 거시경제적 효과

| | | 한국 | | 인도 | |
|-----------|---------|-------|-------|-------|-------|
| |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 GDP | 증가율(%) | 0.01 | 0.18 | 0.00 | 0.18 |
| | 금액(백만불) | 36.3 | 778.4 | -0.1 | 868.0 |
| 후생변화(백만불) | | 289.1 | 925.5 | -56.1 | 519.9 |

주: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5년 이하인 품목은 완전철폐, 그 이상인 품목은 5년간 감축되는 관세인하 폭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10년까지의 관세철폐를 반영함. 한·미, 한·EU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10년이 지나도 철폐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표7. 한-인도 CEPA의 산업생산 효과

(단위: 백만불)

| | 단기 | | 장기 | |
|------|-------|------|-------|------|
| | 한국 | 인도 | 한국 | 인도 |
| 농업 | 75 | -10 | 168 | 181 |
| 수산업 | 3 | -6 | 9 | 0 |
| 제조업 | 564 | -524 | 1,730 | -187 |
| 서비스업 | 981 | 2 | 2,030 | 153 |
| 전체 | 1,623 | -538 | 3,938 | 148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인도 CFPA

2. 기대효과

나. 인력이동

- 인력이동 양허와 관련하여 인도 독립전문가 유입이 촉진될 경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의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특히 IT소프트웨어분야 전문가)

다. 서비스 부문

- 우리나라 서비스 수준이 가능한 부문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서비스 수출 기대(특히 은행지점 설치로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라. 수출입 효과

표 8. 한-인도 CEP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불)

| | 수출증가 | | | 수입증가 | | | 무역수지 | |
|--------|------|-----|-----------|------|-----|-----------|------|-----------|
| | 금액 | 증가율 | 10년 누계 | 금액 | 증가율 | 10년 누계 | 금액 | 10년 누계 |
| 화학 | 23 | 5.3 | 233 | 8 | 4.0 | 75 | 16 | 158 |
| 섬유 | 3 | 2.1 | 29 | 6 | 1.9 | 55 | -3 | -26 |
| 철강 | 11 | 2.1 | 114 | 2 | 0.9 | 18 | 10 | 96 |
| 기계 | 42 | 6.3 | 419 | 4 | 5.7 | 37 | 38 | 382 |
| 전기전자 | 16 | 1.0 | 160 | 2 | 4.0 | 18 | 14 | 142 |
| 자동차 | 30 | 6.1 | 297 | 2 | 7.3 | 19 | 28 | 277 |
| 생활용품 | 2 | 5.9 | 19 | 1 | 4.7 | 13 | 1 | 6 |
| 기타 제조업 | 50 | 6.4 | 503 | 14 | 1.0 | 136 | 37 | 367 |
| 제조업 총계 | 177 | 3.9 | 1,774 | 37 | 1.6 | 372 | 140 | 1,401 |

한-인도 CEFA

3. 협정의 구조

서문

제1장 일반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무역

-부속서 : 관세인하 및 철폐,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제2-나, 28조 가호 4목에 따른 부속서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영역원칙의 예외 등

제4장 원산지 절차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제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제6장 서비스 무역

제7장 통신

제8장 인력이동(부속서 : 전문가 등록)

제9장 시청각 공동제작

제10장 투자(부속서 : 수용, 안보상의 예외 등)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적재산권

제13장 양자간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제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한-미 FTA 경제적 효과

-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외 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
 - 외국인 투자 증대, 기업 및 정부의 해외차입비 감소, 국내투자확대
-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최대공업국과의 FTA로 고도기술 투자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에 기여, 특히 원천기술력과 번처자본이 IT/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Global Standard 적용 확대**
 - 한미 FTA체결을 위한 국제규범 및 선진 제도와 관행의 도입으로 세계기준을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
- **통상마찰 완화**
 -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통상마찰 해결로 통상마찰 완화 기대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 동북아 최초 FTA를 체결,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와 경영/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미국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 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으로 부상기대